

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11. 11.(금) 10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1-61-284)(비공개)

나.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

- (2011-61-246)

○ 제59차 전체회의('11.10.24)에 이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제작비 비율을 원안대로 KBS는 '자체적으로 계획한 전체 매출 대비 지역제작비 비율을 준수하되, 최소 지역제작비 비율을 3%'로, 지역MBC와 지역민방은 '자체적으로 계획한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을 준수하되, 최소 제작비 비율을 지역MBC 10%, 지역민방 14%'로 하기로 의결하고,

- 2010년 지상파방송사의 배당관련 권고사항 이행실적 평가결과, 배당성향이 과도한 KNN, 대구방송, 광주방송, 전주방송, 청주방송, G1(舊강원민방), 제주방송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, '향후 배당실적 및 제작비 투자 등 방송사업 투자실적 등을 재허가, 방송평가, 프로그램 제작지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등에 반영할 수 있다'는 내용을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지역방송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 산정

㉠ KBS 지역국 제작비 비율

- (제작비 비율案) KBS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매출 대비 지역 제작비 비율을 준수할 것, 다만 최소 제작비 비율 3% 이상 투자할 것

- (검토의견) 자체적으로 계획을 상향조정하여 향후 3년 평균 3.06%로 제출한 점을 고려, 3%를 하한으로 제시

※ 최초 제출 계획(2.72%) 대비 자체적으로 10% 이상 상향 조정하여 제출

- (기대효과) 실적 대비 연 50억원 이상 지역제작비 추가 투입 및 지역총국 제작비 평균 5억원 이상 증액

㉡ 지역MBC 제작비 비율

- (제작비 비율案) 지역MBC 각 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을 준수하고, 최소 제작비 비율 10% 이상 투자할 것

- (검토의견) 하위 6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상향조정하고, 최소비율을 제시한 방송사의 향후 3년 평균 투자계획(대전MBC 10.11%) 등을 감안하여 10%를 하한으로 제시

※ 최초 10% 미만의 제작비 투입계획을 제출했던 6개 사업자(대전, 삼척, 안동, 여수, 원주, 경남) 모두 자체적으로 10% 이상으로 수정 제출

- (기대효과) '10년 실적 대비 제작비 비율이 10% 미만인 9개 사업자가 모두 10% 이상의 제작비 투입토록 유도

㉔ 지역 민방 제작비 비율

- (제작비 비율案) 지역민방 각 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을 준수하고, 최소 제작비 비율 14% 이상 투자할 것

- (검토의견) 하위 3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상향조정하고, 최소비율을 제시한 방송사의 향후 3년 평균 투자계획(KNN 14.20%) 등을 감안하여 14%를 하한으로 제시

※ 최초 14% 미만의 제작비 투입계획을 제출했던 3개 사업자(KNN, 대구방송, 제주방송) 모두 자체적으로 14% 이상으로 수정 제출

- (기대효과) '10년 실적 대비 제작비 비율이 14% 미만인 5개 사업자가 모두 14% 이상의 제작비 투입토록 유도

② 재허가조건 이행계획

- (OBS) 역외재송신 허용을 기반으로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추진

※ (재송신) 서울지역 미송출 SO(씨앤엠, CMB) 153만 가구에 대해 방송 송출 개시

※ (증자) '11년 증자를 추진하여 196억원의 자원 확보

- (청주MBC) 뉴미디어사업, 지역연계 문화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재무구조 개선

※ 개선계획 : 부채비율 '10년 77% ⇒ '13년 33% (차입금 60억 상환)

- (YTN라디오) 광고 영업 확대와 증자(33.5억), 인력감축과 제작비 절감 등의 비용절감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추진

※ 개선계획 : '09년 48억 적자 ⇒ '13년 23억원 흑자 (당기순이익 기준)

- (경기방송)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통해 범위반을 해소하였으며, 주주총회 등을 통해 관련 법 안내 등 재발방지 추진

③ '10년 배당 적정성(권고사항)

- (점검기준) 배당성향, 배당률, 제작비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, 배당성향이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

※ 2010년도 전산업 평균 배당성향 16%, 방송업 평균 배당성향 14%(매년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전산업 평균 배당성향 지표를 근거로 평가)

- (SBS) '09년 91억원을 배당하여 38%의 배당성향을 보였던 SBS는 재허가

권고 이후 '10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함

- (지역MBC) '09년에는 배당성향이 16% 이상인 방송사가 3개,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실시한 방송사가 1개 있었으나,
 - 권고 이후 '10년 배당은 배당성향이 모두 16% 미만이 되었고, 1개사당 배당금도 1~2억원 수준으로 평균제작비 24억원을 고려할 때, 과도한 배당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 - (지역민방) 배당성향이 16%보다 높고, 1개사당 배당 규모도 6억~31억원으로 평균제작비 29억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 있음
 - 특히 KNN, 대구방송, 청주방송, 제주방송 등 4사는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이 20% 이상임
 - 이에, '10년 재허가 권고 이후에도 전산업 평균 16%를 넘는 7개사에 대해서는 배당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 필요
- ※ 2010년도 배당성향(전산업 평균 이상 사업자)
- KNN : 43.70%, ·대구방송 : 36.76%, ·광주방송 : 45.64%, ·전주방송 : 42.76%,
·청주방송 : 74.99%, ·G1(舊강원민방) : 23.00%, ·제주방송 : 25.53%
- (조치방안) 경영 여건, 방송제작 투자실적 대비 과도한 배당이 있는 방송사의 경우, 관련 심사 및 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예고하여 자발적 배당 최소화 노력을 유도
 - 방통위에서 실시하는 평가(재허가, 방송평가), 지원사업(제작비 등) 또는 의무 부과(기금징수율) 등에 반영 검토

다.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(안)에 관한 건 - (2011-61-285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, 원안대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TV 등 3개 분야 9개 채널을 2012년도 공익채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
-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결과

공익성 방송분야	채널명
사회 복지	복지TV, 육아방송(Korea Childcare Broadcasting), 일자리방송(JBS)
과학문화 진흥	아리랑TV, 사이언스TV(SCIENCE TV), 예술티비 아르떼(예술TV Arte)
교육 지원	EBS플러스1수능전문, EBS플러스2중학/직업, EBS English

※ 총 16개 채널이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함

라. 방송통신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1-61-286)

○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, 위원회가 수립·공고해야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비전 및 정책목표

- 2기 위원회 정책방향에 따라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, 스마트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,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,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
-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을 실현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「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」 실현

② 방송통신기본계획(안) 주요내용

핵심과제 1

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

-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여 기가인터넷 상용화,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 추진
- 인터넷 이용환경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, 망 중립성 정책방향 등 새로운 인터넷 이용원칙 정립 및 미래 인터넷 연구 강화
- 인터넷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, IT와 인문사회학간 융합 연구,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정책방안 마련 등 인터넷기반사회 대응역량 강화
- 초고화질TV, 초대용량 무선전송 기술 등 차세대 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하고,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경쟁력 강화

핵심과제 2

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

- 클라우드, 사물지능통신, 3D 방송 등 7대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, C-P-N-T 업계간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,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
-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등을 통해 방송통신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하고, 금지행위에 대한 시장조사 강화 등 공정경쟁 원칙 확립
- 4G·브로드밴드 등 방송통신 전략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ITU 전권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로 기술 및 표준화 논의 주도

핵심과제 3

디지털 선진방송 구현

- 방송 소유·겸영규제 개선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방송법 제정, 방송평가 및 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규제 합리화
- 차세대콘텐츠 인력양성, 시청자미디어센터 연계 지역콘텐츠 제작인력 양성 등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, 광고편성·운용규제 개선 및 스마트광고 활성화를 통해 광고시장 규모 확대
-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재정기반 선진화,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을 통해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

핵심과제 4

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

- 제4이통사 시장진입,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, 장애인 방송통신접근성 제고,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등 저소득층·소외계층 지원
- 요금고지서 개선, 통신사 미환급금 관리감독 및 통신장애 관련 피해구제 강화 등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
- ‘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’ 운동 및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인터넷 문화선진국을 구현하고, 모바일 보안위협 대응, 범정부 사이버보안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

③ 기대효과

- (생산증가) 방송통신산업 생산은 153조원('10)에서 184조원('13)으로, 수출은 402억불('10)에서 513억불('13)로 지속적인 성장세 예상
- (고용확대) 방송통신 고용은 모바일 인터넷, 모바일 콘텐츠 등 벤처창업 활성화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일자리 13,000개 창출 전망
- (IT경쟁력) OECD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('10년 1위), ITU의 ICT 발전 지수('10년 1위) 등 IT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최고수준 유지

마.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1-61-287)

-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, 기간통신사업(와이브로) 허가를 신청한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(KMI)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

※ 수정내용 : ‘심사위원 선정기준’에서 ‘최근 2년 이내에 허가신청법인 또는 그 대주주 및 주요 주주로부터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사외이사로 재직**한 사실이 없는 경우 우선**’ 내용 중 ‘**재직**한 사실이 없는 경우 우선****’를 ‘**재직**한 사실이 없는 자****’로 수정

- 주요 내용

① 허가심사 주요 결정사항

- (주파수할당과의 선후관계) 허가심사 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할당 절차를 진행
- (복수 사업자 동시심사) 주파수할당 공고기간(1개월:10.19~11.18) 중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를 추진
 - ※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중 추가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심사 전에 별도로 해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
- (허가대상 사업자수) 다수의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 법인간 경합시,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
 - ※ 관련근거: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(방통위고시) 제13조제5항

②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

㉠ 허가신청적격 심사

- 주파수할당 신청기간(1개월:10.19~11.18)중 허가신청을 접수한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적격 심사를 진행
 - ※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중 추가로 허가신청을 접수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 실시(KMI에 대해서는 기 실시 및 결과 통보(10.24))
- 적격심사는 ①공공의 이익 적합 여부, ②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, ③허가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㉡ 사업계획서 심사

- (심사위원 구성) 20여개 주요 단체, 학회로부터 2~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·경제·회계·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구분하여 구성
 - ※ 허가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, 추천받은 자 중 지난 1차('10.11월) 및 2차('11.2월) 기간통신사업(휴대인터넷) 허가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새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으로 일부 활용

< 심사위원 선정기준 >

- ① 추천기관별, 소속기관별, 전공별 안배
- ② 허가신청역무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연구 또는 근무실적 고려
- ③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, 주파수 할당심사 업무 경험자 우선
- ④ 최근 2년 이내에 허가신청법인 또는 그 대주주 및 주요주주로부터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할 사실이 없는 자

- (심사기준) 기간통신업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(50점), 재정적 능력(25점), 제공업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, 계획 및 기술적 능력(25점)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(총 20개)을 평가

※ 심사 및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, 주요주주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(청문)를 진행

<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 >

심사 사항	세부 심사항목
기간통신업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 (50점)	·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·망고도화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우수성 ·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·이용자보호 계획 및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등
재정적 능력 (25점)	·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·재무구조(수익성, 안정성, 성장성, 신용등급) ·자금조달계획과 업무제공계획 등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
제공업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, 계획 및 기술적 능력 (25점)	·제공 업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·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·타 통신망과 상호접속, 운용보전계획, 장애시 대비계획 ·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등

㉔ 허가대상법인 선정

- (허가대상법인 선정)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

<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에서 적격으로 판정 ②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,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③ 복수의 허가신청 법인간 경합이 있는 경우 총점의 최고득점을 획득한 법인 <p>※ 허가대상법인은 선정기준 ①, ②, ③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</p>
--

③ 향후 일정(안)

- 2011. 11월말 ~ 12월초 : 사업계획서 심사 및 허가대상법인 선정(위원회 의결)

※ 주파수할당 공고기간 중 추가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,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한 허가 신청절차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바. 「전파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61-288)

- o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42차 위원회(‘11. 7. 20) 보고 후 부처 협의,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전파법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안전한 전파환경의 조성

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(안 제44조의3 신설)

- (개정사유)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·조사, 교육·홍보 등 사업을 민간주도로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
- (개정내용) ‘한국전자파문화재단’의 설립근거, 사업범위 및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등 마련

㉡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강화(안 제50조의2 신설)

- (개정사유)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지자기 폭풍 및 전리층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강화 필요
- (개정내용) 우주전파재난의 대비·수습·복구 등을 위한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 계획의 수립·시행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
㉢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행위의 처벌범위 확대(안 제58조의2제10항 및 안 제84조제4호의2 신설)

- (개정사유)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의 인터넷 카페를 통한 공동구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- ※ 현행법에서는 판매 및 수입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중개 및 수입대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
- (개정내용)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중개,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

㉣ 고출력·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(안 제55조의2)

- (개정사유) 방송통신기자재의 장애를 목적으로 방사되는 고출력 전자기파(EMP)에 의한 피해와 누설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
- (개정내용)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②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마련(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신설, 안 제18조의2·제18조의3 신설, 안 제22조제4항, 안 제24조제8항 신설 제24조제9항, 안 제25조제2항, 안 제25조제4항 신설, 안 제72조제1항, 안 제90조제7호 신설)

- (개정사유) 안보·외교용으로 사용승인을 한 주파수 이용현황 파악 및 이용효율

제고를 위하여 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 필요

- 주파수 사용승인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되, 전파혼신·주파수 불법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무선국 검사 근거 마련
- (개정내용) 주파수 사용승인의 정의, 기준, 절차 및 무선국 검사 근거 마련 및 효력상실·취소·시정명령 등 규정

③ 현행법의 미비사항 보완

㉠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승계 허용(안 제58조제3항)

- (개정사유) 산업·과학·의료 등 목적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파응용설비가 상속, 양도 또는 법인합병 등 승계사유 발생 시 해당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승계 필요
- (개정내용) 전파응용설비의 양도, 법인의 합병, 상속 등 승계사유 발생 시 시설자 지위의 승계를 규정한 제23조의 준용 근거 마련

㉡ 전파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(안 제67조제1항 및 안 제68조제1항)

- (개정사유)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·국가적 행사를 위해 무선국을 개설한 외국인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 필요
- (개정내용) 국제적·국가적 행사를 위해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외국인을 전파사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

㉢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출연근거 마련(안 제66조의3제2항)

- (개정사유) 현행 보조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
- (개정내용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기금관리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 마련

※ 기재부와의 협의결과, ①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 설립과 전파진흥기금 신설은 개정안에서 제외, ②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'국고지원'을 '위탁사업에 대한 경비지원'으로 대체 및 ④KCA에 대한 출연범위를 연구개발·기금관리로 명시

④ 향후 일정

- 법제처 심사 : '11년 11월 중
- 국회제출 : '11년 12월 중

사. 「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61-289)

-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음악유선방송용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용도를 복수로 허용하기 위한 「유선방송국설비

등에 관한 기술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활용도가 낮은 음악유선방송용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용도를 복수로 허용

현 행	개 정(안)
○ 주파수대역 : 88MHz~108MHz	○ 주파수대역 : 88MHz~108MHz
○ 용도 : 음악방송대역	○ 용도 : 음악방송대역 또는 종합유선방송대역

아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61-290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55차 위원회('11.10.12) 보고 후,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동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 표명 후 퇴장(의결에 참여하지 않음)

○ 주요 내용

-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(제57조제4항)
- 개정안은 한-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(부칙)

자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61-291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55차 위원회('11.10.12) 보고 후,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동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 표명 후 퇴장(의결에 참여하지 않음)

○ 주요 내용

-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(제8조)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(제3조제2항)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(제3조제3항)
- 개정안은 한-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(부칙)

7] 보고사항

가.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(IMEI) 제도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

- 이통사 중심의 유통망 구조를 개선하고,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및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IMEI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음

○ 주요내용

① IMEI 제도개선 계획

- (개방형 IMEI 제도 도입)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, 분실/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제도 도입

- 개방형 IMEI 제도가 시행되도록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

- ※ SKT, KT 12.4월까지 개발 예정, LGU+는 2G 사업자로 제외

- 이통사가 판매한 단말기 IMEI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하되,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IMEI도 이용자 희망시 이통사가 관리

- (IMEI 표기 개선)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 하고 단말기 화면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

- ※ 국내 제조사는 IMEI를 단말기에 표기하지 않아 이용자가 IMEI를 알 수 없음

- (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) 분실/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의 IMEI 정보를 이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

- (요금제 출시) 단말기 구입방식에 제약 없이 요금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 유도

- (MMS 규격 표준화) 스마트폰은 단말기를 변경해도 MMS*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이통사 MMS 규격을 국제표준으로 단일화

- ※ MMS(Multimedia Messaging Service) : 그림, 사진,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

- (제도개선 내용 홍보) 이통사, MVNO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,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언론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·배포

② 개선 효과

- (단말기 유통망 다변화)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, 유통업체, 온라인 판매점, 편의점 등으로 유통망이 다변화

- 다양한 단말기 유통주체의 등장은 경쟁유발을 통한 단말기 가격인하 및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·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
- (통신요금 부담 완화) 이통사의 단말기 통제력 약화는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여 요금인하를 촉진
- 재고 단말기나 중고폰에 의존하던 MVNO 사업자의 단말기 수급 애로가 해소되어 MVNO 사업이 활성화
- (단말기 선택권 확대) 이통사와 계약된 단말기만 유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사 직영점, 해외 단말기의 수입 유통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

③ 향후 추진일정

- 이통사 시스템 개발 및 통합관리센터 구축(~12.4월)
- 개방형 IMEI 제도 시행(12.5월~)

㉘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. 11. 18(금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2:05)